

항목		가격조사·신청액		
수리요율	외장	☐ 양호 ☐ 불량	내장	☐ 양호 ☐ 불량
	공백	☐ 양호 ☐ 불량	틀 크리닝	☐ 양호 ☐ 불량
	휠	☐ 양호 ☐ 불량	문전석	☐ 전. ☐ 후 / 동전석 ☐ 전. ☐ 후. ☐ 음금
	타이어	☐ 양호 ☐ 불량	문전석	☐ 전. ☐ 후 / 동전석 ☐ 전. ☐ 후. ☐ 음금
기타비용	유리	☐ 양호 ☐ 불량	만원	
	보유상태	☐ 있음 ☐ 없음 (☐ 사용설명서, ☐ 안전장갑대, ☐ 책, ☐ 스페어)		

최종 가격조사·신청 금액 **만원**

이 가격조사·신청 가격은 보험회원의 차량(초기매입)을 바탕으로 한 가격과
(☐ 기술사회, ☐ 한국자동차재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 중고자동차는 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들

- 자동차 매매에서는 성능을 배송할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 성능은 상태점검 가가짓도 옳지 않은 성능 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 기간 또는 보증 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성능은 상태점검에 개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성능 상태점검 가가짐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인도일부터 보증 기간은 (30) 일, 보증 기간은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 기간은 30일 이상, 보증 기간은 2천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해당 자동차 성능은 상태점검에 관한 보증법(국토교통부 고시)을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법은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에 관한 보증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에서 규정한 정보 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alax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365(www.car365.com)에서 판매물 조회 및 정비 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365 > '자동차 판매물 검색' >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 이력조회' > '매매물 이력조회' > '자동차 등록번호 검색'
- 중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능 상태점검자(자동차판매업자)가 거짓으로 성능 상태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른 거짓 상태점검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항 등의 규정에서 행한 처벌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80조제4항에 따라 1차 시정명지 30일, 2차 시정명지 90일, 3차 등특차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사노그림 인증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변형, 용접수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캐브레일, 루프레일, 사이드 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엔드, 도어, 트렁크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 및 교환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 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 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기록한 주행거리가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신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기)에 대해 정보(주행)보다 작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성능 점검 보증 수수료: 0 원

유의사항

가격·조사 신청액

7. 가격조사신청은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가격조사신청 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하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재입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한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해진 것을 적용한다.) 8. 매매당치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신청을 완결한 경우 가격조사신청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신청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 전에 매수인에게(만약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당치는 가격조사신청자에게 가격조사신청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신청 비용을 안 내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가격은 자동차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신청하며,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그렇지 못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전문보충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신청일 기준 기정 확인에 발행된 것을 적용한다. 10. 특히서항면은 가격조사신청자의 자동차 성능 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 상태점검자의 견해를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신청이란	※ 「가격조사신청」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신청」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신청 결과는 중고차 가격변동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서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 자동차 가격 조사 · 신청)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판매인인정 판매인인정 (인도일로부터) / 용당화물 박정현 (서명 또는 인)	2025 년 03 월 20 일 (유효기간: 2025-07-17까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자동차 가격 조사 · 신청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고지자	구매인인정 구매인인정 (인도일로부터) / 용당화물 박정현 (서명 또는 인)	2025 년 03 월 20 일 (유효기간: 2025-07-17까지)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 자동차 가격 조사 · 신청 선택) 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